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6호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안전검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검정대상공산품)에 규정한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안전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취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26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이 조정됨에 따라 안전검정기준 조문을 개정하고, 추가 지정되는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리스, 보냉용기 등 3개 공산품과 검정대상 범위 조정에 따른 유해물질함유 학용품의 안전검정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코자 함. 또한, 종전에는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던 완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정기준을 제정코자 함.

구 분		공산품명	비 고
추가 지정	신규	신규 스케이트 보드, 침대 매트리스	
	검사대상에서 검정대상으로 변경	보냉용기	
검정대상 범위 조정		유해물질함유 학용품	크레용· 파스는 검사대상으로 변경

* 현행 안전검정대상 공산품 중 유아용 의자 및 쇼핑카트는 안전검사대상으로 변경 지정



2. 안전검정기준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안전검정기준 조문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생략)	좌동	
제2조(검정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은 각 안전검정대상공산품별로 (검정) 01 내지 (검정) 29로 한다.	제2조(검정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은 <u>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7]에서 정한 각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이하 "공산품"이라 한다) 별로 안전검정 부속서 01 내지 안전검정 부속서 29를 적용한다. 다만,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업체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u> , 공산품별 안전검정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토록 명문화하고, 부속서에 규정된 것 외에도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표시토록 함.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좌동	
(검정) 01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 (검정) 02 텐트 (검정) 03 양탄자 (검정) 04 반사안전조끼 (검정) 05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왁스) (검정) 06 합성세제 (검정) 07 벽지 및 종이장판지 (검정) 08 물휴지 (검정) 09 수경 (검정) 10 불꽃놀이 제품	안전검정 부속서 01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 안전검정 부속서 02 텐트 안전검정 부속서 03 양탄자 안전검정 부속서 04 반사안전조끼 안전검정 부속서 05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왁스) 안전검정 부속서 06 합성세제 안전검정 부속서 07 벽지및종이장판지 안전검정 부속서 08 물휴지 안전검정 부속서 09 수경 안전검정 부속서 10 불꽃놀이 제품	



나. 공산품별 안전검정기준 제·개정(안) : 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 안전검정 부속서 16 유해물질함유 학용품
- 안전검정 부속서 28 완구
- 안전검정 부속서 29 스케이트 보드
- 안전검정 부속서 30 침대 매트리스
- 안전검정 부속서 31 보냉용기

3. 의견 제출

상기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안전검정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04년 2월 20일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우427-010 경기도 파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509-7411 ~3 ○FAX : (02)507-6875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 9 호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품질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규정한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품질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3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취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26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이 조정됨에 따라 품질표시기준 조문 및 품질표시 부속서 2 (화학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품질표시 부속서 3 (생활용품분야 품질표시기준)을 개정코자 함.

구 분	공산품명	비 고
추가 지정	섬유유연제, 락스, 습기제거제, 탈취제	신규
표시대상 범위조정	가구류	○ 침대에 라텍스 침대함 ○ 썬크대 신규 추가



2. 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품질표시기준 조문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 (생략)	좌동	
제2조(표시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서 정한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해당 분야별로 품질표시 부속서 1 내지 품질표시 부속서 4를 적용한다.	제2조(표시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서 정한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해당 분야별로 품질표시 부속서 1 내지 품질표시 부속서 4를 적용한다. <u>당해 공산품의 표면 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u>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토록 명문화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좌동	

나. 분야별 품질표시기준 개정(안) : 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 품질표시 부속서 2 화학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 품질표시 부속서 3 생활용품분야 품질표시기준



3. 의견 제출

상기 품질표시공산품의 품질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04년 2월 25일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509-7411 ~3
- FAX : (02)507-6875